

# 코웨이 주식회사 ESG위원회 규정

제정 2021.08.05

개정 2026.03.31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코웨이 주식회사("회사")의 정관 제42조 제1항 제4호,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ESG위원회("위원회")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환경, 사회, 지배구조(ESG)와 관련 전략, 정책과 주요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ESG 경영의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 주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, ESG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, 감독,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관계 법령 검토 및 ESG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(구성 및 선임)

- ① 위원회 위원("위원")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
### 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ESG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(회의의 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회의 소집 시 그 소집 일자를 결정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### 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(위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직무 대행자를 의미하며, 본 항에서 같음)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개최 시기 및 장소,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(서면, 전자문서, 구두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

하지 아니한다.

### **제10조(부의사항)**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, 회사의 ESG 경영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ESG 경영 관련 정책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사항
  - 주요 ESG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
  - ESG 관련 KPI 설정
2. ESG 경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
3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**제11조(보고사항)**

위원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부의사항 외에 사항에 대해 위원 및 임직원으로부터 하역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(결의사항의 통지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**제13조(관계인의 출석 등)**

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**제14조(의사록)**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**제4장 보칙**

### **제15조(규정의 개정 등)**

① 이 규정의 제/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21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규정은 202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2항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에 관한 개정 부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